

의안번호	
의 퇴 인	한창민 의원
회 답 일	2024.06.14.
추 계 번호	24C0467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학생인권위원회·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억 330만원, 2029년 16억 2,4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1억 7,100만원(연평균 14억 3,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제24조)	49.4	—	—	49.4	—	98.8	19.8
위원회의 설치(안 제25조)	42.8	85.6	85.6	85.6	85.6	385.2	77
학생인권센터 설치·운영(안 제30조)	711	1,450	1,479	1,508	1,538	6,687	1,337
합 계	803	1,536	1,565	1,643	1,624	7,171	1,434

- 주: 1)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학생인권센터 기능의 조직이 없거나, 조직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우 또는 6급 이하인 교육청 등에 5급 상당의 학생인권옹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3) 학생인권옹호관 지원을 위하여 제정안의 학생인권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교육청에 6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을 각 1명씩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4)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연봉 상·하한액 중간값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 보수상승률 및 공무원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전망치 적용 금액을 합산한 결과값임
 5)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값으로 가정 등이 변동될 경우 결과값은 변경될 수 있음
 6) 법 시행일 등을 고려하여 2025년의 위원회(안 제25조) 및 학생인권센터(안 제30조)의 설치·운영비는 하반기(7~12월) 추계액만을 계산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조·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조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제1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생인권은 모든 교육·교습 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2항) 학생의 인권은 이 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교육기관과 학원 내 구체적인 학생인권 보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의무규정
3	안 제6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	(제1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지원하며 교육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시·도 교육청은 지역 교육기관과 학원 내 실질적인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시·도 조례를 둘 수 있다.	재량규정
4	안 제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항)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成績), 거주지역 또는 형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5	안 제9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항)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학생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휴식공간 등 적절한 시설을 운영하고 필요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항) 학생은 건강상의 이유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규정
6	안 제10조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제1항) 학생은 체벌, 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받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부터의 안전)	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체벌, 폭력,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사이버상의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안 제11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1항) 학생은 안전하게 교육받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교육환경을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충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8	안 제12조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제1항) 학생은 자신의 성장발달단계, 장애 등 개별 특수성 및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학생의 성장발달단계, 장애 등 개별 특수성 및 소질과 적성에 따른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과도한 학습 강요와 경쟁유발로 학생들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9	안 제13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1항) 학생은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 반하여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2호의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경우에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거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의무규정
10	안 제17조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오류로 인한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의무규정
11	안 제19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1항)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12	안 제20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항)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들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3	안 제21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항)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들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4	안 제22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항) 학생은 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들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5	안 제23조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제1항) 학생은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들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제3항)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관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징계절차 및 징계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여부 확인,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의무규정
16	안 제24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교육기관의 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시행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6. 정부기관 및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17	안 제25조(위원회의 설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기관의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에는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도 교육청에는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따라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이하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규정
18	안 제30조 (학생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위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한다. (제3항)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시·도 교육청에서 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	×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이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지원하며 교육정책 수립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구체적 사항이 교육부령·조례·교육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산출하기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
2	안 제24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	
3	안 제25조(위원회의 설치)	○	
4	안 제30조 (학생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①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안 제24조), ②위원회의 설치(안 제25조), ③학생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30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준용함
- 제정안은 교육부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본 추계에서는 교육부와 현재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제정안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본 추계서에서는 유사 업무 수행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동 센터가 신설되는 것으로 가정
- 공무원보수상승률과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사용하며,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안 제25조의 위원회와 안 제30조의 학생인권센터의 경우 2025년에는 하반기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경우 3년 주기로 수립되므로 연구용역비가 2025년과 2028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유사사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준용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4조¹⁾에 따라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음
 - 본 추계에서는 동 사례를 준용하되 예산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하여 향후 5년간 총 9,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를 예상²⁾

[표 2]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안 제24조)	49.4	-	-	49.4	-	98.8	1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 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매5년마다 국민을 위한 인권의 법적 보호강화와 제도적 실천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비로 2022년 5,750만원을 집행하였음.

□ ‘학생인권위원회’와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위원수당에 대하여 추계하며³⁾,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경우 기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교육부에 설치되는 ‘학생인권위원회’는 안 제27조에 따라 총 11명의 위원으로 하되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간 분기별 1회씩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교육부령에 위임되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 위원구성 등을 알 수 없으나, 안 제27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학교 원 또는 판사·검사 등 공무원인 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하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한 1인 1회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위원회 개최횟수 또한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나 시·도교육청의 유사위원회 개최횟수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씩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연간 추가재정소요: 2025년) 11인×20만원×2회 = 440만원

(연간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11인×20만원×4회 = 880만원

[표 3] 학생인권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학생인권위원회(안 제24조)	4.4	8.8	8.8	8.8	8.8	39.6	8.8

주: 법 시행일 등을 고려하여 2025년은 7~12월(하반기)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경우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시·도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제정안의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인천·광주·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교육청으로 총 9개 교육청임

－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교육청에 민간위원 12인을 포함한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가 설립된다고 가정함⁴⁾

3) 기타 운영비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기본경비 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함

4) 위원수와 관련하여 유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서울·인천교육청(20명), 광주교육청(16명), 경기교육청(17명), 충남·전북·전남·제주교육청(15명), 경남교육청(12명)의 사례를 참조하여 가장 다수의 교육청 위

- 위원회 참석수당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1인 1회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회 개최횟수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나 일부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참조하여 연간 4회 개최⁵⁾ 되는 것으로 함
- (연간 추가재정소요: 2025년) 12인(민간위원)×20만원×2회×8개 교육청 = 3,840만원
(연간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12인(민간위원)×20만원×2회×8개 교육청 = 7,680만원

[표 4]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안 제24조)	38.4	76.8	76.8	76.8	76.8	345.6	76.8

주: 법 시행일 등을 고려하여 2025년은 7~12월(하반기)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학생인권센터’ 설치·운영 비용은 기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준용하여 관련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추계함⁶⁾

- 시·도교육청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기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 동 조직이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함)로 재설립되는 것으로 하고, 유사 기능 조직이 없었던 경우 조직이 신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시·도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광주·울산·충남·전북·경남·제주교육청은 유사한 기능의 센터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대구·인천·경기·전남 교육청의 경우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있다고 회신하였음
 - 이에 본 추계서에서는 총 12개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조직이 제정안의 센터로 전환되고⁷⁾, 나머지 교육청에는 센터 조직이 신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신설되는 5개 센터조직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센터장) 안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학생인권옹호관은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되어야 하므로, 유사한 기능의 조직이 없거나 조직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우 또는 6급 이하인 교육청 등에는 5급 상당

원수인 15명으로 가정하였음

5) 서울·광주·충남교육청 등의 경우 정례회를 연 4회 이상 개최할 것을 조례로 규정

6)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추계하며, 사업비의 경우 수행하는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7) 전환에 따른 안내자료 변경 등과 관련된 비용은 기관의 기본경비에서 충당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의 학생인권옹호관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함⁹⁾10)

- (직원) 제정안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이 임명되는 경우 이의 지원을 위한 직원의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¹¹⁾, 기존 유사조직이 없는 교육청에 대하여 6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1명이 신규 임용되는 것으로 가정함¹²⁾
- (기본경비) 신규임용되는 센터장과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경비(기본경비)로 '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본예산을 준용한 6.54%를 계상

[표 5] 학생인권센터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학생인권센터 설치·운영 (안 제30조)	인건비	672	1,371	1,398	1,426	1,454	6,322	1,264
	기본경비	39	79	81	82	84	365	73
	합 계	711	1,450	1,479	1,508	1,538	6,687	1,337

주: 1) 학생인권센터 기능의 조직이 없거나, 조직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우 또는 6급 이하인 교육청 등에 5급 상당의 학생인권옹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2) 학생인권옹호관 지원을 위하여 제정안의 학생인권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교육청에 6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을 각 1명씩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3)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연봉 상·하한액¹³⁾14) 중간값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 보수상승률 및 공무원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전망치 적용 금액을 합산한 결과값임
 4) 2025년의 학생인권센터 설치·운영비는 법 시행일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6개월에 대하여만 계상
 5)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값으로 가정 등이 변동될 경우 결과값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8)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 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9) 임기제 4급 상당 공무원을 임용 중인 서울·전북(병렬)교육청과 임기제 5급 상당 공무원을 임용 중인 경기·충남·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2개 교육청에 신규 임기제 5급 상당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으로 함
- 10) 경기교육청의 경우 ‘권역별’로 임기제공무원 3명(5급 상당 1명, 6급 상당 2명)을 임용하고 있으며,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중 1명이 센터장으로 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센터’가 별도로 설립되어 센터의 장을 추가로 임용할 경우 추가제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 11)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전북·충남 등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 12) 학생인권옹호관을 지원하는 직원의 직급 등은 기존 시·도교육청의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 장학사 또는 6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하였음
- 1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5. 임기제공무원 중 나.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7,989	50,012

- 1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표
5. 임기제공무원 중 가. 임기제공무원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단위: 천원)

연봉등급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81,239	54,132